

등록번호	자치행정과-3459
등록일자	2016.2.11.
결재일자	2016.2.11.
공개구분	부분공개

주무관	자치행정팀장	자치행정과장	주민자치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권세호	나윤수	최선희	김종두	조인동	02/11 代조인동
협 조					

## 통장 연임기준 및 반장활용 활성화 계획

추진근거	대내(외) 협력 현황			사업비
	기관·부서·단체명	협의내용	협의결과	

서 대 문 구  
자치행정과

# 통장 연임기준 및 반장활용 활성화계획

관행적인 통장 재위축을 지양하고,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재위축으로 통장의 역량을 강화하고, 유명무실한 반장에 대한 임무 부여로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고자 함

## I 현 황

### 통·반(장) 현황

(2016. 1. 1. 현재)

구 분	정 원	현 원	증 감	정·현원 대비
복지통장	520	482	-38	93%
복지반장	3,768	2,679	-1,089	71%

### 통장 연임 현황

(단위: 명,%)

구 분	현 원	1차 연임	2차 연임	3차 연임
인 원(명)	482	379	264	181
비 율(%)	-	78.63	54.77	37.55

### 통장 연임(재위축) 기준

- 별도의 선발 위원회 및 평가지표 없이 본인이 희망 할 경우 동장 추천만으로 재위축
- 관행적으로 연임(재위축) 되어 1차 연임의 경우 **75%이상 재위축**

## II 문제점

### 통장 연임의 문제점

#### 검증시스템 부재

▶ 특별한 연임 기준이 없어, 본인이 연임을 희망할 경우 자질이나 능력이 부족하고 민원유발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재위촉을 거부하기 어려움

#### 상대적 기회박탈

▶ 능력있고 참신한 신규 위촉 대상자의 선발 기회 박탈

### 형식적 반장운용의 문제점

#### 인식부족

▶ 최일선 행정 파트너로서의 인식 및 자각 부족

#### 소통의 어려움

▶ 동주민센터 및 통장과와의 협업과 소통의 어려움

## III 추진방향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·반 설치조례」 제5조(통·반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) 제4항의 『통장 및 반장 위촉해제 사유』에 근거하여 **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**

### ▶ 제4항 위촉해제 사유 ◀

1. 관할 통 또는 반이 아닌 곳으로 이주하였을 때
2.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
3.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
4.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
5. 행정구역의 변경,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통·반장 조직을 통합·폐지할 때
6. 직무태만 등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

□ 반장 역량 강화 및 정확한 임무 부여로 자긍심 고취

- 통·반장 연석회의를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
- 주민센터, 통장, 반장을 연계한 **동 밴드를 활성화**하여 쌍방향 소통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

## IV 세부 추진방안

□ 통장 재위촉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지표를 통한 연임여부 결정

- 동 실정에 맞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
  - 인원 : 5 ~ 10명
  - 자격 : 동장, 행정복지팀장, 통회장, 통장 등
-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은 조례 제7조(임무)에 근거 동별 실정에 맞게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
- 평가지표
  - 통장회의(정기 및 임시) 참석여부
  - 행정시책 홍보여부
  - 복지대상자 발굴 실적
  - 전입자 사후확인 및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적극 시행여부
  - 민방위훈련 통지서 전달 여부
  - 사회적 물의 또는 품위손상여부
  - 직무태만, 기타 불성실여부
  - 적십자회비 모금 실적
  - 통 내 순찰 및 불편사항 신고 실적
  - 수방 및 제설활동 지원실적
  - 동장의 직무능력 평가 결과
- 평가지표별 측정기준(참석율, 발굴실적 등)에 따른 배점 부여로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재위촉(연임) 결정

[예시]

평가지표	측정방법 (*동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)	평점	배점
	계		100
통장회의(정기 및 임시)참석여부	-참석율 80%초과(20점) / 60~80%(15점) / 60%미만(10점)		20
전입자 사후확인 및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 실조사 적극 시행여부	-90%이상 거주여부 확인(10점) / 70~89%(8점) / 70%미만(6점)		10
민방위훈련 통지서 전달 여부	-90%이상(10점) / 80~89%(8점) / 80%미만(6점)		10
복지대상자 발굴실적	-3건이상 발굴(10점) / 1건~2건 발굴(7점) / 미발굴(5점)		10
통 내 순찰 및 불편사항 신고실적(동밴드 등)	-5건이상(10점) / 3건~4건(7점) / 3건미만(5점)		10
수방 및 제설활동 지원실적	-3회이상(10점) / 1회~2회(7점) / 미참여(5점)		10
동장의 직무능력 평가 결과			15
기타 직무태만, 불성실			15

반장 기능 활성화를 위한 통·반장 동밴드 활동실적 제고

○ 동별 밴드 가입현황(기준일:2015.12.14.일)

(단위: 명,%)

연번	동명	밴드명	통 장			반 장			비고
			현원	가입 인원	비율 (%)	현원	가입 인원	비율	
	계		471	306	68.71	1,969	79	3.14	
1	중현동	중현 아릅드리	35	21	60	124	4	3	
2	천연동	천연동 주민소통방	30	21	70	123	0	0	
3	북아현동	북아현동 알림방	16	13	81	102	1	1	
4	신촌동	신촌사랑밴드	37	20	54	228	22	10	
5	연희동	연희 보안관	57	34	60	0	0	0	
6	홍제1동	홍제 우리동	40	30	75	247	0	0	
7	홍제2동	홍제2동 정보마당	24	19	79	147	2	1	
8	홍제3동	홍제3동 “함께합니다. 함께합니다”	36	33	92	241	5	2	
9	홍은1동	홍은1동주민센터	49	8	16	237	0	0	
10	홍은2동	홍은2동 토크마당	38	23	61	0	0	0	
11	남가좌1동	남일 통통통	11	9	82	22	0	0	
12	남가좌2동	우리가 남2야?!	38	26	68	177	8	5	
13	북가좌1동	북가좌1동 넷희망	22	18	82	152	6	4	
14	북가좌2동	북가좌2동 스피드특	38	31	82	169	31	18	

- 대상 : 동장, 직원, 통장, 반장
- 내용 : 서대문 구정 및 주요소식, 행정정보, 사건사고, 미담사례, 보안등 및 도로파손, 주차문제, 긴급복지 사항 발굴 시 밴드에 내용 공유 및 쌍방향 소통 강화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
- 목표 : 2016년 3월까지 동밴드 가입률 80%이상

## V 행정사항

- 동별 통장 선발 및 재위촉 위원회 구성 ..... 2016. 2. 29(월) 한
  - 위원회 명단 제출 ..... 2016. 3. 4(금) 한
    - ↳ 4월 재위촉 대상부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임여부 결정
- 각 동별 동밴드 가입실적 제출 ..... 2016. 4. 4(월) 한
  - 통장회의 및 직능단체 회의 시 가입절차, 방법 안내. 끝.